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04 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이달희·고동진·김예지

박준태 • 유용원 • 안상훈

강선영 • 인요한 • 김상훈
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실종성인은 최근 약 7만 5천여 건 내외로 발생하는데, 이는 실종아동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특히 이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실종성인의 비율은 실종아동에 비해 대비 4.9배 높은 수준(실종성인 1.45%/실종아동등 0.3%)에 이르고 있음.

실종 성인은 실종아동등에 비해 그 위험도가 결코 낮지 않음에도 이들을 발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살 의심 등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위치정보 조회, CCTV 자료 확보 등의 발견 및 수색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실종성인에 대하여도 실종아동등과 같이 개인위치정보·이동 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위험에 처한 실종성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·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"실종성인", "특정 실종성인", "유전자 검사", "유전정보" 및 "신상정보"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하여야 함(안 제5조).
- 라.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,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마.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문 조사, 주변인물 진술 청취,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을 할 수 있고,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·인터넷주소·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과 출입·조사 및 관계인 절문 등을 할 수 있음(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).
- 바.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·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 자검사를 할 수 있음(안 제15조).
- 사.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발견된 실종성인에게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고, 가족

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실종성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그 사실 등을 가족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(안 제21조 및 제22조).

- 아.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(안 제24조).
- 자. 개인위치정보 등의 실종성인 발견 목적 외 이용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(안 제25조).

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·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도모하고 생 명·신체 및 사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실종성인"이란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,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 - 가.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
 - 나. 「형사소송법」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·구속·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1)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
 - 2) 「군형법」에 따른 군무 이탈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

- 3)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람 4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2. "특정 실종성인"이란 실종성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자살의 의사 또는 계획을 표시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
 - 나. 실종 당시 실종성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긴급한 의료적 치료 또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발견이 요구 되는 사람
 - 다. 그 밖에 신고내용 및 실종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성인 의 생명·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발견이 요구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
- 3. "유전자검사"란 개인 식별(識別)을 목적으로 혈액·머리카락·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4. "유전정보"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.
- 5. "신상정보"란 이름·나이·사진 등 특정인(特定人)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도모하며,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실종성인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
- 2. 실종성인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
- 3. 실종성인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·교육 및 홍보
- 4. 제5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
- 5.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· 발견 체계의 구축 및 운영
- 6.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
- 7.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 관련 기술 개발 및 장비의 보급
- 8. 제18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관련 유전정보의 관리
- 9.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
- 10. 그 밖에 실종성인의 수색・발견 등에 필요한 사항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실종성인의 신고·수색·발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

제5조(실종성인 신고·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경찰 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(이하 "실종성인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 야 한다.

-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성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실종성인의 신고 및 조치

- 제6조(신고 접수) ①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당 신고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(이하 "경찰관서의 장"이라 한다)은 해당신고를 한 자(이하 "신고인"이라 한다)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취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
 - 2. 피신고인의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시·장소 및 경위
 - 3. 피신고인이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
 - 4. 그 밖에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 해당 여부 판

단과 발견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

- 제7조(신고에 대한 조치)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, 주변인물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, 현장 탐문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알게 된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한다.
 -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실종성인 등록의 제한)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신고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, 피신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고인을 실종성인으로 등록하 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- 2. 신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- 3. 피고인이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4. 피신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제 2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재 확인 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5.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해행위 또는 범죄에 관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6. 그 밖에 실종성인의 등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- 7. 다른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사 또는 조세·복지·보건 등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당사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경우
- 제9조(부당신고 및 허위신고의 금지) 누구든지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제1절 일반적인 실종성인 발견활동

제10조(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)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. 1. 주거지, 최종 목격된 장소 또는 실종성인이 소재하고 있다고 추 정되는 장소에의 탐문 조사

- 2. 신고인 · 목격자 또는 실종성인 주변인물의 진술 청취
- 3. 실종성인의 소재 및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
- 4. 경찰견·드론·헬기 등 발견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한 수색
- 5.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-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 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력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1. 자동차·열차·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
- 2.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·철도·공항·항 만 또는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 는 경우
- 3.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2절 특정 실종성인 발견활동

제11조(특정 실종성인의 등록)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특정 실종 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특정

실종성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)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 실종성인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,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제11호 마목·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(이하 "개인위치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에도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1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
 - 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
 - 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
 - 4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 단 제공기관
 -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개인

- 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,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·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파기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)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법인·단체의 장(이하 "관계기관의 장"이라 한다) 및 개인에 대하여 특정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(이하 "이동경로정보"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 - 1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

- 2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
- 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·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의 사용일시, 사용장소
- 4. 「의료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의 명칭
 •연락처•주소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에 기재된 의료행위 실시 일시
-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특정 실 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목 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-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
- 2.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특정 실종성인 발견 업무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 실
- ④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·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출입·조사 등) ① 경찰관서의

장은 특정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 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 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출입·조사 또는 질문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는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11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경찰관"은 "공무원" 으로 본다.

제3절 유전자검사 등

- 제15조(유전자검사의 실시) ①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견되지 아니한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·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유전자검사대상물(이하 "검사대상물"이라 한다)의 채취를 실시할 수있다.
 - 1. 가족으로부터 검사대상물의 채취
 - 2. 실종성인이 실종 전에 착용·소지하였던 물건이나 거주하였던 장

소에서의 검사대상물의 채취

- 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에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·점유자 의 신상정보를 그 가족·소유자·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 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성인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심신상실,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, 신상정보는 경찰 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⑦ 경찰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전정

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, 유전자검사의 실시, 데이터베이스 구축,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 보의 구분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데이터베이스의 연계)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실종성인의 소재발 견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축·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변 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.
 - ② 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각각의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계·검색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 - ③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)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 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.
 -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.
 - 1. 실종성인을 발견하였을 때
 - 2. 검사대상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

-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・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・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검사대상물·유전정보의 폐기 절차·방법, 기록 및 보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)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)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5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, 유전자검사의 실시를 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.
 -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,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 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(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)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성인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·점유자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

제5장 실종성인 발견 시의 조치

- 제21조(실종성인 발견 시 조치)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(제6조에 따른 피신고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2조, 제23조에서 같다)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실종성인에게 그 실종 신고와 관련한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, 해당 실종성인으로부터 그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.
 - ② 경찰관서의 장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발견된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종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22조(신고인에 대한 통지)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소재를 확인한 때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으로부터 그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신고인에게 발견·소재 확인의사실 또는 그 확인한 일시·장소 및 상황 등을 통지할 수 있다.
 -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외에 해당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그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・내용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)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종성인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.
 - 1. 실종성인이 발견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어 복귀하는 등 해당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우
 - 2. 실종성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. 다만,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 - 3.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
 - 4. 실종성인의 발견활동의 개시 이후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 등록 사항을 해제하는 때에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실종성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소재 등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 및 관련 사항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한다.
- 제24조(관계기관의 협조 등)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

있다.

-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 다.
- 1. 제5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- 2. 제7조에 따른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접수
- 3. 제8조에 따른 실종성인 신고에 대한 조치
- 4. 제9조에 다른 실종성인 등록 제한 사유의 확인
- 5. 제11조에 따른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
- 6. 제12조에 따른 특정 실종성인의 판단 및 등록
- 7.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③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⑥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- ⑦ 그 밖에 요구 자료의 범위 및 요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장 벌칙

- 제2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
 - 2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경로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0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
 - 2. 위계(僞計) 또는 위력(威力)을 행사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 - 3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 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

- 4.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
- 5. 제20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용도로 이용한 자
- 제26조(과태료)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,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 서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